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20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53호(2001.11.0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6호(2002.11.0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67호(2003.03.28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승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08년 5월 16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승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.

구분	정비사업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기정	승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종로구 송인동 20번지 일대	24,256.20	-	24,256.20	

나. 정비계획 수립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m ²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24,256.20	-	24,256.20	100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2,012.80	-	2,012.80	8.30	
	도로	1,145.50	-	1,145.50	4.72	
	녹지	867.30	-	867.30	3.58	
택 지	소계	22,243.40	-	22,243.40	91.70	
	택지1	21,947.40	증)296.00	22,243.40	91.70	공동주택부지 등
	택지2	296.00	감)296.00	-	-	

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.

나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.

3)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의 정비·개량

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.

나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연면적(㎡)	주 된 용 도	건폐율	용적률	층수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송인제 4 구 역 주택 재 개발정 비구역	24,256.20	택지1	21,947.40	송인동 20번지 일대	63,720.77	조합및 분양아 파트	23% 이하	190% 이하	12층 이하
			택지2	296.00		164.85	생활편 익시설	건축법규에 의함		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연면적(m ²)	주 된 용 도	건폐율	용적률	층수
	명칭	면적(m ²)	명칭	면적(m ²)						
변경	송인제 4 구 역 주택 재 개발 정 비구역	24,256.20	택지1	22,243.40	송인동 20번지 일대	63,885.62	조합및 분양아 파트,생 활편익 시설	23% 이하	190% 이하	12층 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-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: 전용면적 115㎡이하 - 전용면적 85㎡이하 : 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 - 전용면적 60㎡이하 : 총 건립세대수의 40%이상							
임대주택 건설비율			○ 임대주택 희망 세입자전원 타구역 입주 및 주거대책비 지급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○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							

4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 없음.

2. 관련서류

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주택과(☎731-1401) 및 송인제4구역
주택재개발조합(☎3676-2231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
다.